

의안번호	제 207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9월 일 (제 303 회)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권 기 수 의원
발의연월일	2011년 9월 8일

#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

(권기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8일

발 의 자 : 권기수

김동환 이광진 이수완

김재중 임헌경 임 현

## 1. 제정이유

-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
-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한옥의 정의 및 적용대상 (안 제2조, 제3조)
- 한옥마을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(안 5조, 제6조)
- 한옥의 등록 (안 제14조)
-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(안 제1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여부 : 2011. 7. 7 ~ 7. 26(20일간), 의견없음

##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한옥”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,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
2. “한옥마을”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지정·공고한 지역을 말한다.
3. “한옥 관광자원화 사업”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말한다.
4. “한옥신축 등”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「건축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는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.

**제4조(도지사 및 한옥 소유자의 책무)** ① 도지사는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한옥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한옥 소유자는 한옥마을에 건축되는 전통한옥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한옥마을선정위원회

**제5조(설치)** 도지사는 한옥마을조성에 관한 조사·심의·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한옥마을선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심의대상)**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옥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2. 한옥신축 등 기준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3. 한옥대상지의 적정성 여부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의 보존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촉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건축·한옥·문화·예술·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충청북도의회(이하“도의회”라 한다)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이 경우 도의회 의원은 2명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.]

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,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에게 중도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도지사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0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한옥지원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.

**제12조(의견청취)**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『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등록 및 지원

**제14조(등록)**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③ 한옥 소유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한옥신축 등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등록의 취소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각종 재해·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

2. 한옥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때

**제16조(등록대장)** 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

한다.

1.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
2.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3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

**제17조(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)**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지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.

1. 보조금지원 :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
2. 융자금지원 : 도지사는 제1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다. 단, 융자금 지원 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마을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마을기반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8조(지원신청 및 결정 등)** ①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등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,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.

**제19조(지원시기)** 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액을

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**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2.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

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권한의 위임 등

**제21조(권한의 위임)**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**제2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건축기본법

제2조 (기본이념)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1. 국민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
2.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
3.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

### □ 건축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6.9>

<생략>

8. "건축"이란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(再築)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
<생략>

12. "건축주"란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,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(이하 "건축물의 건축등"이라 한다)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. <생략>



#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한옥마을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 안에서의 한옥 신축지원 보조금 등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지역별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시범사업 11동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.
- 따라서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 및 참가 인원 등으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.
-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하였음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'11	'12	'13	'14	'15	총계
계	990	990	990	990	990	4,950
한옥신축지원 (보조)	440	440	440	440	440	2,200
한옥신축지원 (용자)	550	550	550	550	550	2,750

※ 용자지원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우선선정 지원임

### 4. 부대의견

-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충청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10호 이상 한옥민박 조성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.  
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의 규모 및 대상지 변화로 인한 예산 증감이 예상됨.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충청북도의회 권기수 의원
연 락 처	043) - 220-5131 E-mail : kks4726@hanmail.net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○ '11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동, 백만원)

사 업 명	전 체			
	계	도비	군비	용자
계	(11) 990	220	220	550
한옥민박신축지원	(11) 990	220	220	550

※ ( )내는 사업량